

기안용지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분류기호 문서번호 | 도이 442-244 | (전화번호 410) | 권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|
| 처리기간 | 시 장 | | |
| 시행일자 | 결재 1980. 6. 2. 제2부시정실 No. 824 | | |
| 보존년한 | | | |
| 보조기관 | 제2부시정 전결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2과장 | 도시정비담당관 시설계획계장 | 법무담당관 합산필 |
| 기안책임자 | 최시영 | 80.5. | |
| 경유 수신 참조 | 각안참조 | 80. 6. 2. 고시 290호 | 통제 |
| 제목 |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변경 | | |
| 제1안 | 내부결재 | | |
| | 1. 관내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의 18일대의 도시계획시설(유통 업무설비)을 도시계획법제12조 및 건설부고시제463호(79.12.10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폐지로 자 합니다. | | |
| | 2. 본건은 당시 제7차(80.5.30)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사항이며 "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" 제5조 6항에 의한 변경임 을 검정 합니다. | | |
| 첨부 | 관계서류 1건 | 끝. | 법무실사 1880.5.1 제 109 통 담당자 법제계장 합산필 합산필 |
| 제2안 | 고시안 | | 관인 |
| | 서울특별시 고시제 호 | | |
| |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변경결정 | | |
| |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검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12조와 건설부고시제463호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| | |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
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0. 5.

서울특별시장

0. 시설조서

|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면적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기정 | 유통업무설비 | 동대문구답십리530 | 32,510 ^{M²} | |
| | | 의18일대 | | |
| 변경 | " | " | " | 폐지 |

0. 별첨도면포시와 같음(도면생략) 끝.

제3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발신: 시장

제목: 동건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
기 보고합니다.

2. 본관은 "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" 제5조6항에 의한
변경결정임을 첨부합니다.

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각1부. 끝.

제4안

수신 총무처장관(시: 문화공보관)

발신: 시(국)증

제목 관(시)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의뢰합니다.

가. 게재구분: 고시

나. 게재건명: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변경결정

다. 근거법규: 도시계획법 제12조

첨부 고시문 사본 2(1)매. 끝.

결재

1980. 5. 2
재무부서장

제5안

수신 동 대문구청장

발신: 시장

제목 동건

1. 귀구관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니
도면정리후 관계과에 통보하고 도시계획업무에 착오없도록할것
첨부 고시문 사본및 도면과1부. 끝.

제6안

수신 수신처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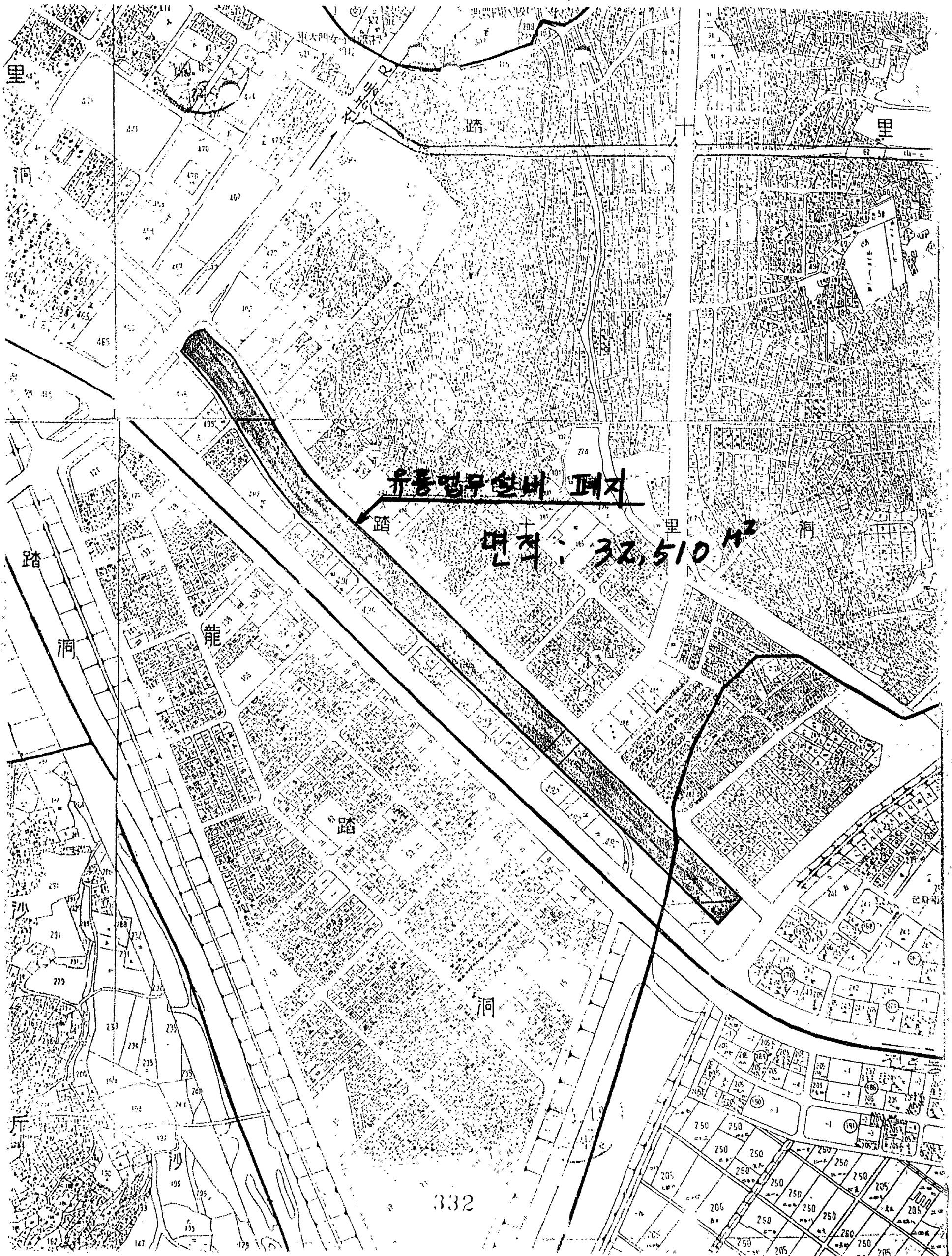
발신: 과장

제목 업무통보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
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 사본및 도면과1부

수신처: 건축지도과장, 도시계획1과장, 도시행정과장 끝.



유동업부설비 폐지

면적: 32,510 m²

332